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0. . (제 회)	

우 주 개 발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21. 10. 00.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75호, 2021.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조문 삭제(제4조 일부 삭제)
- 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문 신설(제4조 단서 신설)
-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신설(제6조의3 신설)
- 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이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항
2.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사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보안의 중요성, 중앙행정기관별 예산비율, 우주산업 육성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사항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안보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안보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안보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⑦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지원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 <u>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 1. <u>국방부차관</u> 2. <u>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u> 3. <u>삭 제</u> 4. <u>삭 제</u> 5. <u>삭 제</u> 6. <u>삭 제</u> ② <u>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u> ③ · ④ (생 략) <u><신 설></u>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u><삭 제></u> ② ----- ----- ---.다만,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u>

항을 심의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중앙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
는 우주개발 사항

2.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사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안보우주개발실무위
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보안의 중요성, 중앙행정기관
별 예산비율, 우주산업 육성효
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사항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
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에서 안보우주개발 관련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
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안보우주개
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안보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⑤ <u>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u> ⑥ <u>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u> ⑦ <u>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과 관련된 안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⑧ <u>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 -----
---	---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u>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지원</u>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4626